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18. 12. 31.> [시행일 : 2020. 1. 1.]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

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(제25조제3항 관련)

1.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

구분	오염물질	산정방법
일반오염 물질	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	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64÷22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46÷22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17÷22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34÷22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36÷22.4
특정대기 유해물질	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	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19÷22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36.5÷22 .4 일일유량×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×10 ⁻⁶ ×27÷22.4

비고

- 1.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= 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농도
- 2.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,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
- 3.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표준상태(0℃, 1기압을 말한다)에서의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(mg/Sm³)으로 하고,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 (ppm)으로 한다.

2. 일일유량의 산정방법

일일유량 = 측정유량 × 일일조업시간

비고

- 1.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(m²/h)로 한다.
- 2.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.